

光州直轄市西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(案)

審 查 報 告 書

1992年 5月

總務委員會

1. 審查經過

가. 提出日字 : 1991年 12月 23日

나. 提出者 : 光州直轄市 西區廳長

다. 回附日字 : 1992年 5月 11日

라. 上程日字 : 第15回 光州直轄市 西區議會(臨時會)

第1次 總務委員會(92. 5. 15)上程

提案說明. 檢討報告. 質疑答辯

第2次 總務委員會(92. 5. 16)議決

2. 提案說明的 要旨

(提案說明者 : 西區 總務局 總務課長)

가. 提 案 理 由

○ 통장의 사기양양과 처우개선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의 현행지급제도

범위가 10%에서 15%로 확대되고 선발자격요건이 바뀜에 따라 현실정에
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함.

나. 主要骨子

- 1) 수혜대상에 있어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
한자를
— 재능이 우수한자로 하고 (제1조)
- 2)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는 통장경력 3년이상 근속자에서
— 2년이상 근속자로 (제2조)
- 3) 입학 또는 재학등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"100분의 50이내"를
— 100분의 60이내로 (제2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

(專門委員 : 李元昌)

동 조례는 본래 재정 목적이 통장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둔 제도로

- 1991. 7. 16 서구의회 제5회 임시회에서 장학금 정원을 10%에서
15%로 개정의결한바와 같이 지금 범위가 확대되고 기타 여건이 바
뀜에따라 조례 내용이 현실정에 맞지않아 본 목적에 부합되지 못
하고 있어
-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확대 지급코자하므로 개정하여
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質疑答辯要旨

質 疑	答 辯
<p>○ 수혜대상자의 자격요건이 엄격하여 지급배정인원 전원이 혜택을 못받았다고 하는데 지급범위를 확대하면 진정 수혜를 받을수 있는자가 혜택을 볼수 있는지 ?</p> <p>○ 일선 동사무소 행정업무는 통장 뿐만아니라 반장도 많은업무를 협조하고있는데 확대해서 반장자녀까지 장학금을 지급할수 있는지?</p>	<p>(答辯者 : 總務課長 尹福植)</p> <p>○ 개정전에는 까다로운 조건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자가 현행조례가 개정되면 많은 통장자녀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것으로 사료됩니다.</p> <p>국비로 지급하고 재원의 한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반장자녀에게 까지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</p>

5. 討論要旨 :

6. 審査結果 : 별첨 조례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슴

7. 體系字句 整理內容 :

제4조 (선발) 구청장이 통장으로 부터 추천된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교육위원회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를

— 해당학교장 의 의견을 참작하여로 자구정정

8. 其他事項 :

(법규명 : 광주직할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)

신.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
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사정으로 인하여 중.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(이하 "장학금"이라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 사기아양과 통장자녀의학업증진을 위하여 통장의 자녀로서 중.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재능이 우수한 ----- ----- -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	
<p>제2조(장학생의 자격)장학생은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</p>	<p>제2조(장학생의 자격) ----- 2년이상 ----- ----- -----</p>		
<p>1.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<u>100분의 50이내</u>에 해당하는자</p> <p>2. (생략)</p>	<p>1. ----- ----- <u>100분의 60이내</u> ----- 2. (현행과 같음)</p>		
<p>제3조(추천)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자를 매학년 마다 선정 구청장에게 추천한다.</p>	<p>제3조(추천) ----- 해 당되는자 전원을 ----- -----</p>		
<p>제4조(선발)①구청장이 동장으로 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교육위원회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일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선발)① ----- ----- 해당학교장 ----- ----- -----</p>		
<p>②구청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</p>	<p>②-----</p>		

현행	개정
<p>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, 학교간의 균형,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 <p>제8조(지급정지)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</p> <p>3-5.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 가능한 범위내에서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<u>구청장은 동으로 부터 추천된 대상자가 많아 경합이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여 결정하되 통장의 근속년수를 우선 고려하여 결정한다.</u></p> <p>제8조(지급정지)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삭제)</p> <p>3-5. (현행과 같음)</p>